

대안적 돌봄으로서 공동체 돌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ommunity Care as Alternative Care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차성란**

Dept. of Child Education and Counseling, Daejeon University
Professor Cha, Sung-Lan

〈목 차〉

- | | |
|---------------------------|----------------------------------|
| I. 서론 | IV. 공동체 돌봄의 실천 사례 |
| II. 생애주기별로 살펴 본 돌봄 개념의 문제 | V. 기존 공동체 돌봄 정책사업의 문제점과
이후 과제 |
| III. 대안적 돌봄으로서 공동체 돌봄 | 참고문헌 |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oblems in defining the concept of care and redefine it broadl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community care as an alternative way to change the negative image of care concept. **Method** :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was used for the study. **Results** : First, care is limitedly conceptualized as a concept of physical care and care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child care is perceived only as a burden, and it is avoided to express care needs in the youth period, and the care of the elderly is putting off responsibility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Third, through community care, we should be able to feel happiness in life itself and care needs to be recognized as a way of being throughout our life.

Key Words : 돌봄(care), 자녀돌봄(child care), 가족돌봄(family care), 공동체(communitiy), 공동체 돌봄(communitiy care)

* 이 논문은 2018년 타 학회 추계학술대회(2018년 11월 9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주저자·교신저자: 차성란(E-mail: slcha@dju.kr)

I. 서론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왜 자녀돌봄, 노인돌봄 등의 돌봄이 가족에게 부담, 장애물 등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공동체 돌봄이 타당한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자녀돌봄은 아직은 대부분 근로자에게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직장 문화 속에서 경력단절의 요인이 됨으로써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자기개발을 막고 있다. 그리고 노년 돌봄은 돌봄을 제공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시간적 제약, 육체적 피로를 감당해야 하는 짐으로 인식되며, 돌봄을 제공받는 노인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돌봄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지만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로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정적 문화가 있다.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영유아기에서부터 자녀돌봄을 해야만 하는 부모의 자녀양육기, 노인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중·장년기, 그리고 노인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돌봄을 수행하고 돌봄을 받는 모든 활동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부분들이다. 그렇다면, 그 어떤 돌봄과 돌봄을 감당하는 시기도 삶의 일부로서 보다 의미 있게, 보다 행복하게 과업을 해낼 수는 없는 것인가?

개인과 가족이 느끼는 돌봄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돌봄을 사회로 이전시키는 소위 돌봄의 탈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영역을 벗어나 돌봄 시설, 교육 시설, 요양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포괄적 의미의 돌봄이 과연 개인의 정서적 요구, 가족의 의미, 행복한 삶에 부합되는가? 부모의 역할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들을 돌봄

의 주체가 아닌 복지소비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소비자로서 객체가 아닌 주체에 의한 돌봄, 돌봄이 삶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대안적 돌봄 방식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문제 인식의 출발점이다.

최근의 가족 트렌드 변화는 더 이상 혈연에 국한되는 가족에게만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가족돌봄을 거부하는 개인화의 가족문화 확산¹⁾, 가족구조, 가족형태, 가족관련 가치관 등 가족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가족원의 돌봄에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다. 전통적 가족기능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의 복지시스템은 변화방향과 속도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돌봄과 노부모돌봄을 전담하던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참여율, 가족규모 및 세대 축소, 다양해진 가족유형 등 구조적 환경 변화는 돌봄을 담당할 가족의 부재에 직면케 한다. 전통적 가족돌봄 기능과 개인의 직업경력 또는 자기성취 사이에서 돌봄은 독박육아, 경력단절, 소모적 시간투자 등 부정적 이미지가 극대화되어 있다. 또한 자녀,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을 더 이상 가장 친밀한 지지체계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가족 트렌드를 조사한 김소영 외(2017)에 의하면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 밀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혈연에 연연하지 않는 다양한 관계 맺기에 의한 가족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사례로 줄혼, 반려동식물 문화, 쉐어하우스, 공동체 마을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가족의 돌봄과 부양 책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가족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개개인이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 구조에 의한 가족내

1)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8)에 의하면 선호하는 노후생활비 마련은 스스로(34.0%), 또는 본인과 사회보장제도(33.7%)라는 응답이 자녀(7.6%), 또는 본인과 자녀(10.2%)라는 응답의 4배 가까이 이르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들이 아플 때 간호(19.0%), 경제적 불안감(17.3%), 심리적 불안감 및 외로움(10.3%)을 느끼지만, 독거노인 비율은 2008년 19.7%에서 2014년 23.0%, 2017년 23.6%로 증가하였다. 자녀와의 동거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크게 감소해 2008년 32.5%에서 2017년 15.2%로 10년만에 절반으로 하락하였다.

자녀돌봄은 작동하고 있다. 전통적 성역할은 현대사회에서 신전통적 역할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남성의 도구적 역할 담당에 비해 여성의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의 이중부담 구조의 기능 상태이다. 아이와 놀아주는 아빠, 쓰레기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남편의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으나 남성은 가정경영에서 여전히 보조자이며 자녀돌봄에 대한 실제적, 심리적 관리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 고립상태에서 독박육아를 해야 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정서적 불안정과 사회적 소외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고,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근로환경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부추기며,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대리양육 방법의 모색, 대리양육 비용 지출의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노인들은 나이 먹는 것이 죄라도 되는 양, 자신의 노후를 젊은 세대에게 부담지우지 않으려 하고, 노년생활을 자녀세대로부터 분리시켜 공적 돌봄체계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가족돌봄이 일·가정 양립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일·가정 양립실태조사(김영옥·이승현·이선행, 2016)에 의하면 대표적인 가족친화제도인 육아휴직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체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90.3%인데 비해, 5-9인 기업체는 35.1%에 그치고 있다. 자녀돌봄에 매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차출퇴근제 이용률은 300인 이상 기업이 40.4%인에 비해 5-9인 기업체는 6.2%에 머무르고 있다. 전통적인 육아 담당자인 여성들이 일과 가족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표준인증제를 통한 보육시설의 질 개선, 남성의 양육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아빠와 함께 하는 토요일프로그램 등과 같이 질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봄정책의 대부분은 재정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2009년 7월 도입된

양육수당정책은 2013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편적 재정지원정책으로 확대되었다(이승윤·김민혜·이주용, 2013). 가장 최근에는 2018년 9월부터 월소득기준이 있으나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95%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받기 시작하였다. 보육분야 예산은 5조 4,039억원으로 2018년 총예산의 13.93%(보건복지부, 201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중심의 물량정책이 돌봄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 1.05명이라는 기록적인 최저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노인돌봄은 이미 가족의 영역에서 벗어난 듯 보인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짐작하듯이 노후생활비 마련에 있어 '본인과 국가가 준비' 33.7%, '본인 스스로' 34.0%, '국가 차원' 14.1%로 나타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부모의 경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60.8%), 도구적 지원(63.6%)을 받고 있지만, 노인독거 비율이 2008년 19.7%, 2014년 23.0%에 이르고 있고, 독거 및 노부부를 합한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72%(보건복지부, 2018)에 이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족에 의한 일상적 노인돌봄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노후생활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응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직한 욕구에 기초한 자발적 선택'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이미 사회문화적 압력이 노인돌봄을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응답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답하고 있다. '당연히 가족 안에서 살아야, 자기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노년에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할 때' 노인들이 분노, 공포, 퇴행 행동을 보인다(신경아, 2011)는 것은 가족에 의한 돌봄과 시설서비스에 의한 돌봄 그 사이 어디쯤인가에서 대안적인 방식의 돌봄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사회 한편에서는 극단적 개인화에 따라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을 자각하고, 개인화 이전의 지역사회 유대,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 문화의 가치를 조금씩 인식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80년대부터 시작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며, 90년대 중반부터는 자녀양육 방식에 급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모들을 중심으로 공동육아운동이 이루어져 왔다(조한혜정·차성란, 2017). 민간의 공동육아운동은 2008년 여성가족부의 육아포맷이라는 공공의 정책사업으로 이어졌다. 기저에는 저출산정책의 관점이 자리잡고 있기는 하나 지역사회 유대에 기초한 돌봄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8). 좀 더 최근에는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마을돌봄을 천명하며 ‘다함께돌봄’ 사업을 시작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포맷이에 이어 맞벌이가구 초등자녀의 틈새돌봄을 마을에서 해결하는 방식의 ‘맞벌이가구자녀돌봄’ 사업을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시작한 노인그룹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8년 전북 김제를 비롯한 전국 5곳에서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시범사업’ 50여개를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이진숙, 2010). 노인들이 오래전부터 살던 곳에서 이웃과의 유대를 통해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Aging in Community)’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김유진, 2016 a). 이들 사례들은 사업주체가 민간 또는 공공인지의 여부, 사업의 목적, 사업의 기초가 되는 가치 등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동체유대가 가족의 요구, 가족의 삶의 질에 좀 더 부합되는 가치라는 점을 공통된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업이 얼마나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부가 공동체 돌봄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겠다.

가족돌봄에서의 기능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돌봄요구가 파악되면서 공동체 관련 연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따로 살지만 함께 살아가는’ 비혈연적 대안 공동체의 수용가능성(김미경, 2016), 비혼

청년층의 다양한 돌봄 공동체 사례(김혜경, 2017), 농촌 독거노인 생활공동체의 대안적 가족으로서의 가능성 탐색(이진숙, 2010),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대안적 가족으로서의 가능성(류경희·김순옥, 2000), 혈연관계 없이 양육기능만을 전담하는 양육공동체의 대안가족 관련 정책 지원 방안(차선자, 2008) 등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돌봄 방식으로서의 공동체성보다는 가족 돌봄 기능을 대신하는 의미의 대안적 가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돌봄을 삶의 방식의 부분으로서 간주하고 지역사회 유대에 의한 상호존적인 배려와 협력의 돌봄 방식, 즉 경쟁문화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배려와 협력의 삶의 방식으로서 공동체 돌봄의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다.

한편 전생애 돌봄 중 자녀돌봄의 경우, 대안적 방법으로 육아공동체가 최근 정책 영역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 광주전남의 사례(심미경·민현정, 2017), 부산지역 사례(김현희·박진아, 2014), 경기도 사례(김미정·백선정·남승연, 2017) 등 지자체의 공동체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돌봄과 노인돌봄은 공동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양상,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돌봄의 구체적 실행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가족의 돌봄기능은 축소되고 있으나 우리가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돌봄은 ‘가족의 돌봄기능이 작동할 때와 유사한 친밀한 유대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이라는 점이다. 공동체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공동체 돌봄이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가족에 의한 돌봄에 근접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효과적 대안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공동체 돌봄은 변화된 가족환경 하에서 가족의 돌봄기능에 부담을 주는 돌봄요구 그리고 시설에 의한 공적 돌봄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돌봄서비스 사이의 간극을 좁혀보려는 대안적 돌봄 방식으로 시도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공동체 돌봄이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차성

란·권혜진·조정현, 2011)이나 노인들(노인환, 2017)에게 사회적 관계 욕구 충족, 행복감, 삶의 질 인식 등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 운동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확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돌봄을 복지서비스 제공의 관점 또는 객체로 대상화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의 자발성, 주체적 참여를 요하며, 참여자들의 공동체 돌봄이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심이나 이해가 전제조건이 된다. 관주도의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효과를 얻을 수 없는 특성이라 하겠다.

공동체 돌봄을 촉진,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할 때, 현재는 자녀, 청년, 중장년, 노인의 연령층에 따라 각기 본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공동체 돌봄의 당위성이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의 공동체 돌봄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 문화운동의 성격을 띤 공동체 돌봄의 추진 주체에 대한 물이해, 공동체 돌봄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동체 돌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략 부재, 성과지향의 경쟁적 문화의 대응으로서 가족원들의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돌봄의 본질적 특성과 별개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정책 문제해결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 등 공동체 돌봄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작 단계에서 매우 다면적, 복합적인 요인들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생애 돌봄으로서 가족돌봄 개념의 재정립, 가족이 부모로서, 상호 돌봄자로서 기능하는, 따라서 정서적 위안과 여전히 가족의 의미와 가족 기능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는 대안적 돌봄으로서 공동체 돌봄의 가능성을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현재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동체 돌봄 사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생애주기별로 살펴 본 돌봄 개념의 문제

성과지향의 경쟁적 문화 속에서 깊어진 개인주의와 개인화는 돌봄을 통한 성장과 정서적 위안, 즐거움, 행복감을 상실시키고 있다. 경제적 성과나 직업적 성취에 장애와 부담이 되는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요인에는 정부의 돌봄정책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의 돌봄방식이나 이미지는 지속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라 할 수 있으나 그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돌봄정책 역시, 돌봄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개인주의, 성과주의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 결과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돌봄 개념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돌봄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인된 그러나 짐'으로 인식되는 자녀돌봄

특히 최근,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일·가정 양립이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돌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절반을 넘고 있는(52.7%)(e-나라지표) 현 사회에서 돌봄은 기혼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면에서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자녀돌봄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 과업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며, 출산 이후에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의 돌봄역할은 자녀에서 머물지 않고, 노부모 돌봄의 책임, 그리고 자신의 노년기에는 배우자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전생애를 억누르는 돌봄이라는 부정적 관점이 작동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가족내 돌봄활동의 실천면에서 사실이다.

레비나스는 가족의 돌봄을 맡고 있는 아내이자 어머니가 가정을 지킴으로써 “말 없는 환대와 영접”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이에 대해 가

부장적 남성중심의 관점에서 여성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공병해, 2010). 돌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부분적으로, 돌봄이 갖는 본질적 특성이라기보다 돌봄을 여성이 전담하는 성별분업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다.

자녀돌봄만을 특정화했을 때, 자녀에게 돌봄은 돌봄을 받을 권리이며, 돌봄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 정서이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애착은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Bowlby, 박은영, 2002에서 재인용)로 정의된다. 애착행위의 목적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보호를 받고 싶은 것으로서, 이를 통해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며,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송성성, 2014). 영유아의 부모와의 애착은 충분한 질적 돌봄을 받음으로써 자녀가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안정상태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남성육아휴직이 미미하나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90,123명 중 남성은 12,04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 비율이 13.4%에 이르고 있어 2003년 1.5%의 대략 10배 가까이 증가폭을 보였다(고용노동부, 2018). 남성육아휴직자의 휴직 이유를 살펴보면, 아이들과 놀기 위해 휴직을 했다는 적극적 동기(김진욱·권진, 2015)를 표출하는 등, 아빠들도 초기 양육기를 자녀와 함께 지내고 싶은 욕구(홍승아, 2018)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빠들의 자녀육아 관심 계기를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아버들은 자녀양육 참여시간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68.5%), 그 이유는 ‘직장 일 때문에 바빠서(45.0%)’,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26.7%)’로 답하고 있었다(이옥경·문정희·박나리, 2016). 육아휴직 경험한 아빠들은 아이와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으며, 그로 인해 아이와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14). 물론 자녀돌봄

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즐거움과 힘듦의 “양가감정”(한겨레, 2018b)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전통적 성역할 문화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을 뿐 아버지들에게 있어 자녀돌봄은 기쁨의 원천이다. 또한 아빠와 자녀의 애착형성은 은퇴기 이후 가정내 아버지의 지위를 확보하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모의 돌봄권이 주장되는 이유이다.

2. ‘돌봄으로부터 도피’하는 청·장년기

돌봄의 구성으로 보면 돌봄 활동은 신체적 돌봄과 비신체적 돌봄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저출산정책으로서 자녀돌봄, 노인정책으로서의 노인돌봄은 신체적 돌봄에 편중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영유아자녀 돌봄의 수유, 기저귀갈기, 잠재우기, 아동돌봄으로 등·하원시키기, 간식챙기기, 씻기기, 노인돌봄으로 식사, 화장실 이용, 목욕하기 등 신체적 돌보기나 물리적 보호가 돌봄의 전부인 양,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돌봄에 대한 인식 오류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신체적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청소년, 중장년층이 돌봄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청년층 1인가구의 경우 임시직 및 일용직 비율, 실업률이 높으며,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43.4%)이 높은 다인가구 청년층과 달리 이들의 비경제활동 비율은 9.2%로 낮다. 이들은 생계유지가 중요한 경제활동 이유가 되는 비자발적 1인가구로서, 불안정한 주거실태와 함께, 불균형한 식생활, 높은 음주율과 우울증 등의 지표(이여봉, 2017)들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비용을 대부분 부모세대와 가족이 부담해왔다(김영란·장혜경·이윤석, 2017). 그러나 특히 최근의 청년들은 풍요한 시대에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세대이며, 교육에 저당잡힌 미래, 취업에 발목잡힌 현재 상태에 고통받고 있는 세대이다. 힘든 상황을 잠시라도 잊고자 작은 사치를 통해 보상받고 싶은 소비심리(이은희·유현정·이준

영, 2016), 즉 소확행 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 미래 동력이 될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돌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청장년의 돌봄요구 기피를 야기하는 또다른 요인은 수치심으로 인식되는 돌봄개념이다.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이 이루어진다는 돌봄 의미의 축소화는 청년, 중·장년층 성인들의 돌봄에 대한 요구를 숨김으로써 정서적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돌봄이 약함과 동일시될 때, 돌봄의 요구가 표출되는 것은 곧 약함이 있는, 흠결이 있는, 완성되지 못한 성인으로서 인식될 수 있으며, 자존감을 지키고자 하는 성인들은 돌봄 요구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성인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돌봄이 필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돌봄 요구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기저층 한국문화이다.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창피하다고 느끼는 수치심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3. '방황하는 돌봄', 중·노년기

중년기는 사회경제적 지위 및 대인관계 등 사회적 절정기인 동시에 은퇴를 감지하고 노년기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김명자, 1998). 인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바뀌는 격정적 전환의 시기(Erikson, 1950, 송경미, 2016에서 재인용)이기 에 흔히 중년기 위기가 거론되곤 한다. 심한 우울, 분노, 증독적 또는 강박적 집착, 자살충동과 같은 극심한 심리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미친 중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오제는, 2013). 중년 여성의 경우, 갱년기로 특징 지워지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며, 자녀의 성장 독립에 따른 역할감소, 배우자의 사회적 성장과 안정된 지위에 비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역할로 자아실현의 기회와 시기를 잃었다는 상실감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연자, 2011). 이 같은 중년기 위기적 특성은 익히 알려져 온 바로 문

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 개인적 차원이지만 문제해결이 모색되어 왔다.

중년기 돌봄과 관련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대상은 중년기 남성 1인 가구 집단이다. 지금까지 여성 한부모가정이 대표적인 돌봄요구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급격히 높아진 이혼율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남성 1인 가구가 새로운 돌봄 요구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장년층 중에서도 특히 남성들은 은퇴라는 생활사건을 계기로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체성 상실, 역할 없는 역할(roleless role), 가족내 지위 약화 등을 경험하면서 부정적 심리상태 및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최인희 외, 2014). 더욱이 이혼, 실직, 부도 등의 이유로 혼자 지내는 중년의 비자발적 1인 가구는 독거노인처럼 사회적 관계의 단절, 소득, 고용, 건강, 주거 등에서의 위기를 겪고 있어 또 다른 돌봄공백 집단(한국일보, 2018 b)으로 분류된다.

중년남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권혁철과 김형용(2017)의 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는 중년남성 집단에 집중되고 있다. 2000년에는 1인 가구의 58.6%가 2030세대이고 4050세대는 26.4%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기준 남성 1인 가구는 39.3%로 2030세대 42.2%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족해체나 실업 요인 등 비자발적 1인 가구 뿐 아니라 자녀교육이나 맞벌이를 위해 혼자 사는 자발적 1인 가구도 다수를 차지한다(이명진·최유정·이상수, 2014). 자발적 1인 남성가구는 소득과 교육 등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 비자발적 1인 남성가구는 이혼이나 경제적 이유로 혼자 살아가며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직업과 경제적 지위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권혁철·김형용, 2017) 일반적으로 노인 1인가구의 낮은 삶의 질이 문제되고 있으나 중년기를 포함하여 전 생애주기에서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만성 질환, 우울 의심률, 자살생각 등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강은나·이민홍, 2016).

중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지망 역시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들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이 다인 가구의 경우 83.9%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1인 가구의 경우는 60.1%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다인 가구의 경우 65.4%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1인 가구의 경우는 47.7%에 불과하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다인 가구의 경우 75.8%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1인 가구의 경우는 59.7%에 불과하였다. 특히 중년남성 1인 가구는 신체적, 비신체적 그 어떤 돌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년 남성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나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건강상 여러 문제도 안고 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도, 적극적 의지도 부족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그 어느 영역에서도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노년기의 돌봄은 정부의 공적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효’의 가치가 사라졌다고는 하나 노인돌봄에 대한 가족기능의 규범이 미약하나마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장년층 돌봄보다 적어도 돌봄의 양적인 면에서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 돌봄서비스는 건강과 재산 등 일정 기준에 의한 선별적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으로 가족과 사회, 모두에서 노인돌봄이 떠밀리고 있다는 점, 이같이 불안정한 노인돌봄체계 상황에서 자신의 진정한 내면적 돌봄요구를 그대로 표출하기 어렵다는 점, 돌봄 제공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중장년층과 마찬가지로 돌봄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보편주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재는 선별주의라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 150%이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건강상태 등 등급판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차상위 계층인 경우 돌봄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2017년 58만명에서 2022년 86만명으로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돌봄서비스 재정이 열악하고, 너무 높은 돌봄서비스 이용자격 수준으로 노인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이수민, 2013).

노인들의 진정한 내면적 돌봄요구는 어떠한가? 2017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에 의하면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2%로 2008년 32.5%의 절반 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거주 형태를 질문한 결과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비율이 57.6%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자녀, 형제 등 가족과 함께 거주’가 10.3%,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31.9%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거주 시 가족돌봄이 수반된다고 보면, 시설에 의한 공식돌봄서비스 의사가 비공식돌봄의 3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돌봄을 받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으면 요양원을 가거나 최악의 경우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김미경, 2016), 시설거주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비자발적 입소’, ‘어쩔 수 없는 선택’, ‘선택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시설에서의 삶이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한다(신경아, 2011)는 것은 노인들의 내면적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준다.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공식돌봄이 늘어나면 비공식돌봄이 감소한다는 대체모델(substitution model)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Van Houtven & Norton(2004), Charles & Sevak(2005) 등 외국의 연구들은 비공식 돌봄이 공식 돌봄의 이용을 줄이고, 요양원의 입소를 늦춘다고 하였으며, 함선유와 홍백의(2017)는 그들 연구에서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을 무조건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 돌봄망에 우선적으로 의

존하는 보상모델(compensatory model)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오히려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수준은 정적 관계가 있으며(Davey & Patsios, 1999), 공식 돌봄이 가족의 돌봄을 줄이기보다 돌봄 인프라 수준이 높은 복지국가에서 돌봄의 총량을 확대시킨다고(Motel-Klingebiel et al., 2005) 보고되고 있다.

결국 점차 높아지고 있는 노인들의 공식돌봄 선택 비율은 공식돌봄에 대한 선호로 보기 어려우며, 우리 사회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노부모 부양의식이 노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양기대를 포기하도록 문화적 압력을 가한 결과임을 추측할 수 있다.

노인돌봄을 ‘방향’으로 표현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적 압력을 버티고 있는 노인들의 돌봄에 대한 결정권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희경(2018)은 돌봄 정의(正義)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탈상품화, 탈젠더화, 탈젠더화와 함께 노인의 참여와 권한을 제시하였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理想)’을 돌봄 정의라 할 때, 공식 돌봄 영역은 차지하고 적어도 비공식 돌봄 영역인 가족 안에서라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돌봄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돌봄의 경우, 영유아 스스로 돌봄 요구를 표현하기 어려우나 부모의 자녀돌봄 역할은 공적으로 수용되는 당연한 것으로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강력한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노인 돌봄은 변화된 가족가치관으로 인해 더 이상 당연한 돌봄 요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보다 가족의 가치, 가족원의 의사가 돌봄 의사 결정에 중심 요소가 되고 있다. 노인이 아닌 가족이 원해서 시설에 입소하는 강압적 상황이지만, 이를 강압이라 표현하지 못하는 전 사회적 회피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년기 돌봄요구는 비공식돌봄과 공식돌봄의 중간, 그 어느 지점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 돌봄요구와 외현적 돌봄요구 표출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Ⅲ. 대안적 돌봄으로서 공동체 돌봄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지금까지의 돌봄은 개념 인식에 있어 성과를 지상최대의 목표로 삼아 개인주의와 합리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아기 및 노년기의 생애 특정시기,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돌봄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돌봄이 직업적 성취나 성과에 장애가 된다는 심리적 억압 상태에서 비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가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수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과 돌봄을 구분시켜, 돌봄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거주 공간인 마을은 직장, 학업 등 성과지향의 공동체에 뒤로 밀려 삶 속에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관행적 돌봄이 갖는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적 돌봄 방식을 모색해보고자, 지향해야 할 돌봄 개념의 확장 그리고 마을에 기반을 둔 공동체돌봄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돌봄개념의 확장

1) 존재 방식으로서 전생애 돌봄

하이데거는 돌봄을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했다(공병해, 2010).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아니라 존재방식으로 스스로 건강한 삶(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돌봄이라는 철학적 사유를 하고 있다. 돌봄의 본질은 살아있는 자의 생존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돌봄을 부정하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확대 해석도 가능하다. 트론토는 돌봄을 “우리의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보수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며 돌봄의 대상은 “우리의 몸과 자아, 환경 등 삶을 지속하는데 관련된 모든 것”으로 정의하였다(Tronto, 2006, 신경아, 2011에서 재인용). 돌봄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활동(신경아,

〈표 1〉 기존의 돌봄과 대안적 공동체 돌봄

구분		관행적 돌봄	새로운 생활문화운동으로서 마을공동체 돌봄
돌봄 개념	기본 가치 및 목표	- 성과지향 - 개인주의, 합리성	- 삶 자체에서 누리는 행복 - 좋은 삶(good life)의 가치
	돌봄에 대한 인식	- 특정 시기, 특정 대상	- 전 생애 기간의 돌봄 • 존재방식으로서 돌봄
돌봄 수행 (운영)	돌봄 참여	- 억압적	- 자발적, 주체적 참여 • 주민자치에 의한 운영방식
	돌봄 방식	- 제공자와 수혜자(수동성)	- 자기돌봄 • 마을공동체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소극적 자기돌봄 • 돌봄자원 교환을 통한 적극적 자기돌봄
돌봄 공간	돌봄공간으로서 마을	- 마을과 무관한 돌봄	- 마을이라는 일상생활 공간의 공유 • 전 세대 마을주민의 참여 • 일상생활과 통합된 돌봄 - 주민들 사이의 거주 근접성 • 다양한 돌봄요구에 반응하는 효율성 - 주민들 사이의 소통기회로 작용하는 돌봄 • 일정 거리의 친밀도에 의한 교류 활성화 •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

2011)이며, 인간 삶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세네카는 자기 돌봄을 “삶의 기술이며,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삶의 기본적 방식”이라 정의하고 있고 하이데거의 철학에서는 ‘보살핌’을 “자신에게 맡겨진 존재를 지키고, 감시하고, 존재 가까이서 체류하고 숙고하고 염려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현존재의 방식이다”(공병해, 2010에서 재인용)라고 하고 있다. 즉 ‘돌보다’는 돌봄의 관계나 대상집단과 관계 없이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돌봄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돌봄대상이 되는 시기를 유아기 및 노년기로 한정하는 ‘대상의 특정화’는 폭력 가능성을 높이는 ‘폭력 대상화’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돌봄은 제공받는 것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을 유년기 및 노년기 특정시기의 문제로 범주화함으로써 돌봄 대상이 되는 유아 및 노인에게 약함, 약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이들은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약한 자이며, 돌봄 제공자의 통제 하

에 돌봄의 양과 질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돌봄은 곧 약함’으로 동일시하는 제한적, 부정적 이미지는 ‘폭력의 대상화’로 연결된다. 폭력은 ‘타인을 지배하거나 제압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성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김희선, 2016)로서, 힘없는 약자로 인식되는 유아 및 노인에게 이들에게 ‘힘을 악용’(Abuse of power)할 수 있게 된다. 돌봄 대상을 유아 및 노인으로 특정화하는 것은 일종의 ‘힘(power)의 가시적 구조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힘을 악용하는 폭력의 방식은 돌봄대상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 유아나 노인 모두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유아와 달리 노인은 자신의 돌봄에 대해 인지적 측면에서 주체적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관계 집단인 가족과 친척에 의해 돌봄과 관련된 결정에 억압이 작용하며, 결정에 따른 실행이 강요되곤 한다.

이를 좀 더 확대해보면, 이러한 맥락적 관계는 한

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 규범적 가족 범주에서 벗어나는 가족에 대한 돌봄이 동정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들의 인권, 평등성을 간과하는 무의식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과 유사하다. 거시적으로는 사회통합에 역기능적인 돌봄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미시적으로는 가족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가정생활환경의 질적 저하, 가족친화적이지 못한 가정생활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 돌봄을 삶의 존재양식으로 인정한다면, 돌봄 요구의 표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돌봄요구를 숨김으로써 개인이 감당하게 되는 심리적 고통의 많은 부분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좋은 삶’의 가치 지향

공동체의 개념과 공동체 돌봄의 특성에 담겨있는 ‘좋은 삶’의 가치를 찾아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대표적 공동체 개념으로 인용되는 Hillery(1955)의 정의는 공동의 유대(common ties),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요소로 한다(이정민 · 이만형, 2017). Nisbet(1966)은 고전적 공동체 정의에 가깝게 공동체를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며, 함께 경험하고, 함께 있는 것을 전제한 작은 규모의 안정된 구조”로 정의하였다(이정민 · 이만형, 2017에서 재인용). 공동체는 지리적 영역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동의 유대는 일상성, 친밀감, 소속감의 하위 정서를 만들어줌으로써 공동체의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주거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발달로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도 교제할 수 있게 되면서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전통적 공동체보다 물리적인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중요성은 약화되었다(심미영 · 민현정, 2017). 디지털 삶의 방식이 굳건히 자리잡은 현대사회는 이미 다양한 유형의 근접성 없는 공동체(Webber, 1963, 이정

민 · 이만형(2017)에서 재인용)가 작동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가족원들은 가족내 관계에서조차도 긴밀한 유대를 기피하고 느슨한 유대를 지향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선회하였다(김소영 외, 2017). 전통적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이웃과의 친밀한 유대를 전제하기는 어려우나 돌봄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은 주거, 노동, 문화, 돌봄이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되는 마을 단위이다.

김미영(2015)에 의하면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첫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구성되고 있으며, 공동육아, 공동주거운동, 공동밥상운동, 소비자생산자협동조합, 작은도서관만들기, 마을만들기운동, 부족한 복지를 지역단위에서 보충하는 돌봄 공동체가 있음을 사례로 들고 있다. 이들은 이미 고착화된 개인주의를 넘어서 더불어 살기를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가치 변혁적이라 평가하였다. 둘째, 공동체 내부의 관계 유형 및 관계의 종류를 기준으로 공동체성을 가능하다고 할 때, 생활 현장에서 그 공동체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공동체는 공유된 유사한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함께 향유하는 사회집단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며, 선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운동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공동체 돌봄 역시 운동으로서 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이 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실천력을 필요로 한다. 돌봄 공동체에 이를 적용한다면, 돌봄제공자나 수혜자 모두에게 ‘좋은 삶’으로서의 공동체 돌봄이라는 참여자들의 공유된 가치,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 돌봄은 그 같은 변혁적 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공동체 돌봄 가치에 대한 수용과 가치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하는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성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며, 실천을 통해 노력해 나가는 힘(김미영, 2015), 또는 추진력의 정도로 개념화된다. 공동체 돌봄의 실천력은 공동체의식 또는 공동체성(김미영, 2015)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공동체 돌봄은 공동유대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집단을 의미하는 명사로서 공동체의 의미보다 얼마만큼 공동체의 힘을 갖는가를 나타내는 형용사로서 공동체성 돌봄이나 공동체적 돌봄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적합하다 하겠다.

생활 현장에서 공동체가 공유하며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공동체 운동이라 한다면, 공동체 돌봄은 하나의 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던 돌봄의 또 다른 방식의 돌봄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생활문화운동이다. 가족원들의 행복한 삶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규범과 윤리로서 공동체 돌봄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로서 ‘좋은 삶 (good life)’에 대한 사유가 참여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 돌봄이 지향하는 또는 돌봄 공동체가 공유하는 ‘좋은 삶’은 공동체주의의 이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구적 합리주의, 개인적 소유 지향의 삶의 방식이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지역에 기반한 전통적 공동체를 해체시켰다고 본다. 결국 공동체 돌봄은 개인주의, 도구, 성과, 경쟁을 지양하고 배려와 협력의 삶의 방식을 좋은 삶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동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는 바람직하게 여기는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실천력인 공동체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공동체 돌봄에는 ‘좋은 삶’의 방식으로서 돌봄에 대한 지향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공동체 돌봄에서 참여자가 공동체 가치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둘째, 공동체 돌봄은 성과지향의 경쟁적 문화에 대한 거부로서, 배려와 협력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활문화운동이다. 공동체라는 단어는 규범적 사회과학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김미영, 2015). 가정학은 가족원들의 행복한 삶에 부합되는 공공의 선에 대한 탐구와 실천을 지원하는 생활학문이다. 공동체 돌봄과 이를 포함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은 개인주의적 경쟁문화에 따른 가족문제와 사회적 병리현상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최협 외(2006)는 자본주의의 발달이 소유적 개인주의, 도구적 합리

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도덕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환경운동, 생명운동에 관여하는 집단에서 공동체 가치를 지향하면서 환경친화적 공동체주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적어도 자녀돌봄의 경우, 공동체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부모들의 활동주체를 분석해보면, 학습성공을 강요하는 학부모로서의 돌봄이 아니라 놀이를 강조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주고자 하며, 놀이와 학습의 장으로서 자연환경을 선호하며, 생태가치를 중요시하는 돌봄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손태주·차성란, 2018). 공동체 돌봄은 공공의 선으로서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생활문화 개선 운동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공동체 돌봄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공동의 유대를 토대로 이기적 개인주의의 삶의 방식을 탈피해 서로의 요구를 보살피는 배려의 돌봄을 좋은 삶의 공유가치로 삼아 새로운 돌봄방식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생활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2. 돌봄활동의 수행

1) 자발성에 의한 주체적 돌봄참여

공동체 돌봄이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비교할 때, 가장 기본적 차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주체적 돌봄 활동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병창(2017)은 자치를 공동의 목적을 민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공동체 내부 운영은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보면 자치는 민주와 같으나 민주는 공동의 목적을 관료들 통해 실행하는 것에 반해 자치는 목적을 구성원이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모두가 실행에 참여하게 되며, 내부 운영을 위한 역할을 분

담하게 된다. 하지만 분담역할은 고정되거나 전문화되지 않는 가변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공동체 돌봄은 참여의 자발성, 공동의 목적, 민주적 합의과정, 주체적 활동으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공동체 돌봄의 특징은 탈가족화가 아닌 사회적 돌봄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탈가족화는 돌봄기능이 가족으로부터 이탈되는 의미로 예를 들어 자녀돌봄의 탈가족화는 부모-자녀간 관계를 단절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방과후 돌봄에 아이를 맡기고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일만 하는 사례, 키즈카페와 같은 시설서비스를 구매하고, 자녀를 방치하는 사례들은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양적,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으며,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극도로 제한한다. 이에 비해 사회적 돌봄은 가족-지역사회-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함께하는 방식으로서 부모의 자녀돌봄 참여를 전제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를 활성화하는 돌봄이 될 수 있다.

2) 소극적 또는 적극적 자기돌봄

최근에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수동적 노인의 모습이 아닌 노화로 인한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노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김동철·고혁근·김대건, 2016; 어유경·김순은, 2016). 자기돌봄은 노년기 건강 및 질병 관리를 통해 신체기능의 저하를 늦추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의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노인에게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부여하기도 한다(서홍란·정윤경·김희년, 2013).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의 경우, 어린 자녀의 자기돌봄은 자녀돌봄의 방임이 됨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시기를 벗어나면 자기돌봄은 전생애에 걸친 자기존재 방식으로서 가능할 수 있다.

자기돌봄은 돌봄활동의 참여수준에 따라 소극적

자기돌봄과 적극적 자기돌봄으로 구분해볼 수 있겠다. 노인을 예로 들면, 소극적 자기돌봄은 노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친숙한 공간에서 친밀한 이웃과 사물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자기존재의 유지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병혜(2010)는 하이데거 철학을 기초로 하여, 자기돌봄을 생활세계에 잘 '거주'(Whonen)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잘 거주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친숙함이 배여 있는 '터'에서 주위 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한국사회의 노인돌봄 문화에서 '거주'의 의미는 노인들이 자신이 살아온 친숙한 '터'인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의 방식(공병혜, 2010)이 노인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들로 하여금, 몸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거주해오던 마을 안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이웃과의 관계에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노인들은 마을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는' 자기돌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 자기돌봄에서 핵심적 요소인 친숙한 환경, 친밀한 관계는 아동기, 청·장년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령과 관계없이 자신의 거주지인 친숙한 마을 안에서 마을주민들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와 유대가 형성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잘 살아가기'의 가능성은 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경우, 적극적 의미의 자기돌봄은 활동적 고령화 상태인 노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 과거에 비해 경제적, 직업적 전문성이 강화된 베이비부머 집단이 돌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노년기는 의존적 시기라는 하나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노년 시작 연령을 조사한 김정석·김송은(2012)의 연구에 의하면 법적 노인연령 기준은 65세 미만을 노인이라고 인식한 비율은 13.3%에 머물고 있으며, 65-69세는 30.8%, 70-74세는 47.2%로 나타났다. '자신이 스스

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현재 연령과 노인시작 인식 연령간 차이에 영향을 받았으며,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라라도 노인인지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생애과정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와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년기를 구성하는 고령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노년층의 특성에도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했다(석상훈, 2011). 공적노후소득 보장제도에 공백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28.3%에서 2017년 41.1%로 크게 상승했으며, 경제적 활동 이외의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참여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변금선, 2018).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의 다양한 대안적 활동기회의 한 방법으로서 마을공동체 돌봄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세대교류는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모든 세대가 서로의 지혜, 경험, 기술 등을 자기 자신의 발달과 향상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눔으로써(권용신, 2016)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실천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마을 거주자인 노인들의 공동체 돌봄 참여는 젊은 세대인 양육기 부모들과 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간 통합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경험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자기돌봄이 가능해지고 젊은 부모들은 돌봄의 부담을 덜어 이점, 돌봄을 받는 아이들은 노인과의 활동공유를 통한 학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옥(2014)은 유아와 조부모 세대간 통합교육 프로그램 시행 결과 유아는 노인에 대한 인식, 정서지능,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증진에 효과적이며, 유아-조부모 간 친밀감 형성과 상호협력하는 공동체 의식 증진(김영옥, 2014)을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노인들의 자녀돌봄은 세대간 교류를 가능케 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유대와 그에 의한 공동체 돌봄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3. 돌봄 공간

1) 일상생활의 지리적 공간공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공동체 개념에는 공동의 유대, 상호작용, 지리적 영역의 공동요소가 있으나,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지리적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사이버 공동체, 정서적 공동체, 취미공동체 등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지리적 영역과 별개로 형성, 유지되는 돌봄공동체는 공동체성 보다는 함께 돌봄의 이점을 누리 고자 하는 이기적 목적이 끼어들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기적 동기에 의한 참여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발견하거나, 공동체성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마을이라는 지리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돌봄은 첫째, 다양한 세대의 마을주민 참여가 가능해진다. 영유아기 아이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로부터 의식적, 무의식적 돌봄을 받으면서 부모세대, 노인세대와 접촉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직접 자녀돌봄을 지원해준다거나 마을 안에서 노는 자녀를 관찰함으로써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자녀돌봄을 받을 수 있다. 부모세대는 노인들로부터 자녀돌봄을 지원받음으로써 노인세대와 교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마을의 청장년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취미, 여가활동을 통해 또는 마을 일자리나 마을기업과 같은 마을 기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주민과 교류하고 정서적 돌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노인세대는 앞서 언급한대로 소극적 자기돌봄 형태로 마을 안에 '잘 거주' 하는 것만으로 마을의 청장년 세대와 교류할 수 있다. 전 생애 돌봄을 마을이라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리적 영역으로 좁힘으로써 마을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세대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며, 세대간 통합의 노력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마을 안에서의 돌봄은 일상생활과 통합된 삶의 일부로서 돌봄을 가능케 한다. 마을이라는 지리적 공간의 경계 안에서 주민

들은 다양한 유형의 자원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고 이는 지역사회 유대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마을 주민들 사이의 친밀감은 서로의 가정생활 환경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며, 서로에 대한 돌봄요구를 예측 가능케 한다. 비의도적으로 습득된 서로의 돌봄요구는 마을 안에서의 일상적 삶을 통해 비공식적 방법으로 자유롭게 충족될 수 있다.

마을공동체 돌봄은 정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마을 곳곳의 다양한 장소에서 생활의 일부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놀이터나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마을은 그 자체가 돌봄의 장소이며, 어른들, 노인들로부터 생활 속 감시를 통해 안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감시활동을 구분된 독립적 돌봄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삶과 아이들에 대한 감시를 구분없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마을안 도로, 상점, 공원, 시설에서 오가며 만나는 주민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의도치 않게 상대의 돌봄요구가 파악되면 곧바로 삶의 일부로서 그에 대해 반응할 수 있다. 지리적 공간 공유없이 이루어지는 돌봄서비스나 돌봄공동체는 직접적인 돌봄요구에만 반응함으로써 요구충족의 양적, 질적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2) 다양한 돌봄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거주 근접성

마을이라는 지리적 공간이 공유됨으로써 확보되는 주민들 사이의 거주 근접성은 충족되는 돌봄 요구의 종류, 시간, 장소의 폭을 크게 확대시킨다. 공동체 돌봄에 대응되는 공적 돌봄서비스나 시장의 돌봄서비스는 요구와 요구 충족 사이의 형식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 서비스로서 돌봄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가장 큰 차이는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규정된 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규정된 시간 안에서만 요구가 충족될 수 있다. 구조화된 서비스가 갖는 경직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리적 거리의 근접은 필수적 조건 또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조건(이정민·이만형, 2017)이 된다.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동,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 공동체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친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된 상태라면, 이들 사이에 교환할 수 있는 돌봄요구의 종류와 기간, 교환되는 시간, 교환되는 장소는 무엇이든,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지는 확장성을 갖는다. 제주지역 공동체 돌봄 사례를 조사한 연구(손태주·차성란, 2018)에서 주택 신축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이웃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례, 둘째 자녀의 병원 입원기간에 첫째 자녀의 숙식과 등하교 지원을 해주는 사례, 늦은 밤 아픈 가족을 위해 갑작스런 차량 지원하는 사례,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력단절자의 학업을 위해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사례 등 실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돌봄요구는 흔히 낮시간 동안 자녀돌봄이나 노인의 재가돌봄처럼 정해진 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돌봄 요구가 발생하거나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단시간 또는 장기간 요구는 발생빈도가 높지 않더라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운 경우들을 예상할 수 있다. 거주 근접성에 기반한 마을 공동체는 일시적, 긴급한, 예외적인 돌봄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융통성과 대응력을 지닌다 하겠다.

3) 주민들 사이의 소통 기회로 작용하는 돌봄

공동체 돌봄은 가족돌봄보다는 멀고, 공적 돌봄서비스나 시장의 돌봄서비스보다는 가까운 돌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돌봄활동 참여자들의 소통을 촉진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공동체 돌봄 참여자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느슨한 유대’가 소통의 참여 장벽을 낮추며, 소통의 지속적 유지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가족에 의한 돌봄은 가족의 부양의무가 갖

는 압박감이 작용하며, 높은 친밀도가 내부의 결속력을 높이지만 배타성을 지닐 수 있다. 돌봄제공자와 돌봄수수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에 비해 공적 돌봄서비스에서의 돌봄제공자와 돌봄수수자는 서비스전달체계의 형식적 기준에 따라 만나게 되는 이방인의 관계이다. 시장의 돌봄서비스는 금전거래가 개입됨으로써 돌봄서비스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밖에 없다. 공적 돌봄서비스나 시장의 돌봄서비스에 의한 돌봄에서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좋은 돌봄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석재은(2014)은 공적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돌봄'을 '좋은 관계에 의한 돌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 기능적 돌봄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사이에 시장규범이 자리하지 않고 상호신뢰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적 조건이 충족될 때, 돌봄을 받는 이의 총체적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적절한 친밀감이 있는 마을 노인을 마을 주민인 이웃들이 돌봄을 함으로써 노인돌봄 의무자로서 가족이 느끼는 부양부담은 낮추고, 돌봄을 통한 이웃들 사이의 소통은 촉진될 수 있다. 특히 세대 간 소통의 기회가 늘어난다. 공동체 돌봄이 노인돌봄의 총량을 담당할 필요는 없다. 공적 돌봄서비스, 시장 돌봄서비스의 형식적, 기능적 돌봄의 한계를 일부 대체, 보완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돌봄이 이웃들 사이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자녀돌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품앗이육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품앗이육아 참여가 이웃사람들을 사귀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응답자의 79.1%를 나타내고 있다(차성란 외, 2011). 노인 대상의 마을돌봄과 비교할 때, 자녀에 대한 신체적, 기능적 돌봄 외에 부모들 사이의 재화, 정보, 정서 자원 교환이 폭넓게 이루어짐으로써 소통의 양은 물론, 다양성과 깊이를 더하는 소통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

지역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돌봄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가정에도 순기능을 한다. 건강한 가정은 다음의 5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 기본적 물질 토대, 민주적 가족관계, 가족의 역할 수행, 생활문화의 계승과 유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이다. 지역사회와 단절된 가정은 건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일상적 가정생활 범위 밖에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외에 일상에서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양육정보공유, 틈새 돌봄서비스 교환, 활동공유 등이 이루어질 때 가정의 건강성이 강화된다. 가족품앗이 사업성과 연구(차성란 외, 2011)에 의하면 품앗이참여 부모들은 양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도움을 얻는 효과 외에도 이웃과 사회적 교류를 함으로써 정서적,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며, 남편의 품앗이육아에 대한 지지가 높아짐으로써 부부관계가 향상되는 이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의 개별화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차원에서의 개별화 경향을 공동체 돌봄 참여를 통해 개선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적인 수준의 마을공동체 돌봄은 자발적, 주체적 참여로 특징되는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의 시작은 해결해야 할 돌봄요구라는 당면한 과제이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들의 권리와 평등,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의 가치 실현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미래세대의 공동체 경험과 학습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은 공동체 돌봄의 초기단계로서 이상적 기대일 수 있으나 한부모, 다문화, 조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은 전형적 부부가족의 규범적 가치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으로써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자영업, 농어업 등 직업유형이나 맞벌이가정 등 돌봄취약층의 돌봄요구를 '전문성은 낮으나 가변적 역할분담'(이병창, 2017)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지위가 낮아진, 그러나 아직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은 돌봄제공자로서 또는 자기돌봄 방식으로 젊은 세대와 교류를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공동체돌봄을 통해 공동체성을 경험하고, 공동체 가치를 내면화시킴으로써 미래 사회 공동체 문화를 담보할 수 있는 씨앗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V. 공동체 돌봄의 실천 사례

공동체 돌봄은 민간에서 순수하게 자기 결정에 의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개입에 의한 공동체 돌봄이 가능하다. 자발적 참여에 의한 민간의 공동체 돌봄이 돌봄의 공동체적 운영 방식,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의 순수성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기에는 공동체 돌봄의 높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빠른 확산 속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 운동이 갖는 본질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사업으로서의 공동체 돌봄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녀돌봄에서의 공동체 돌봄

공동체 돌봄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공동육아 운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관심 있는 부모들이 모여 시민사회적 활동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추진해 왔다(조한혜정·차성란, 2018). 민간에서 시작된 공동육아운동은 정책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2008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10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육아포럼’이라는 사업명으로 시범적 운영을 실시한 것이 시초이다(차성란, 2009). 정책으로서의 공동체 돌봄 사업은 과거 육아가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안에서 이웃간 일상적 품앗이를 통해 일시적 돌봄 요구가 충족되었던 마을의 돌봄기능 회복을 기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 연령이 비슷한 부모들 대여섯명이 품앗이팀을 구성,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함께 모여 돌봄프로그램을 계획, 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품앗이팀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용공간으로서 센터 내부 또는 외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66개 시군구에서 공동육아나눔터 16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자수가 67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용자의 만족도도 93.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978). 중앙부처에서 시작한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양육기 부모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에 힘입어 서울시, 세종시, 시흥시, 제주특별자치도, 천안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관리인력 배치를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공동체돌봄사업 전담기구로 2016년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공동체성이 높은 팀을 공모사업으로 선정, 마을의 아이들까지 함께 돌보는 품앗이팀, 아빠들이 주도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참여했던 부모들의 돌봄협동조합 결성 등 성공적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마을공동체 중 돌봄공동체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차성란, 2018).

2. 청년의 자기돌봄 형태로서의 공동체 돌봄

청년층의 경우, 돌봄의 관점이 아닌 이들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취업문제, 주거문제를 중심으로 공동체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 공동체로서 청년층의 주거공동체 사례를 김혜경(2017)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귀촌을 목적으로 시험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공동체 사례, 연구와 주거를 공유하는 공동체 사례, 비혼여성들의 경제공동체, 거처할 공간 해결을 위한 청년주거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체 등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또다른 청년 주거 공동체인 ‘달팽이 집’ 역시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활동에서 시작, 주택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례이다(임소라, 2018).

3. 중장년층의 공동체 돌봄 시도

중장년층의 정책 차원에서 공동체 돌봄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 경우 '2013년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 2015년에는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50+세대로 규정, 교육, 상담, 일자리,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 이후 각 지자체에서도 인생이모작지원사업을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신중년재충전센터 설치 발표 및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 등이 발표되었다.

중장년층 대상의 정책은 미흡한 노후준비 상황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중심적 사업이 되고 있다. 지자체²⁾들은 50+ 세대의 정신건강 및 고독사 예방에도 관심을 갖고 중장년층이 자기돌봄 형태로써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강소랑 외, 2017). 50+센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경우, 생애 7대 영역을 규정, 이중 사회적 관계, 가족, 여가, 사회공헌 등의 영역에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50+세대의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나 협동조합을 매년 20여개씩 선정, 중장년층의 건강한 문화의 확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서울시 50플러스 재단 홈페이지). 이들 사업은 공동체 돌봄이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거나 박탈되는 은퇴기 또는 베이비부머 중장년층의 정서적 문제를 사회적 관계 회복 및 유지라는 방법을 통해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돌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눈에 띄는 사례로는 중년독거 남성 계층의 독거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양천구

에서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1대1 멘토멘티사업, 희망딴발 프로그램 등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한국일보, 2018 a).

4. 노인돌봄에서의 공동체 돌봄

노인돌봄은 건강상태에 따라 요양돌봄지원과 일상생활 및 정서적 돌봄지원의 크게 두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김영란, 2014). 요양돌봄 지원은 복지성격의 돌봄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공동체 돌봄 방식의 노인돌봄은 일상생활 및 정서적 돌봄지원 범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노인돌봄에서 오래된 논의 중 하나는 노인들이 오래전부터 살던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aging in place, 나아가 지역의 공동체에 의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마을에서의 생활(aging in community)에 대한 것이다(윤성호·주상현, 2018). 비교적 건강한 노인의 경우에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적 문제들이 생기며, 사회적 소외에 따른 정서적 돌봄이 요구된다. 또한 자녀돌봄과 유사하게 돌봄 요구가 비정기적이거나 긴급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적 돌봄지원체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김영란, 2014; 윤성호·주상현, 2018, 신경아, 2011)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공동체가 바람직한 돌봄 방법이며, 가족의 대안이 될 수 있다(이진숙, 2010)는 점을 밝히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돌봄의 실천적 사례는 2006년 전북 김제에서 경로당을 공동생활거주 공간(김유진, 2016)으로 활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한기에 각자의 거주지와 공동생활공간을 오가며 함께 숙식을 함께 하는 유동적 공동생활 방식을 띠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유은

2) 2017년 6월 기준, 서울시, 대전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등 8개 지자체에서 인생이모작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강소랑, 정혜윤, 송창용, 최일선, 유선치, 임승연,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주·김미영·이건정, 2013)이 확인되고, 농촌지역 독거노인 돌봄의 성공적 사례로 알려지면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민간사업으로는 2009년 서울 마포 두레생활협동조합에서 돌봄두레 ‘어깨동무’를 통해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해결되지 못하는 노인돌봄 수요를 해결하고자 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장수정, 2012).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 운영되고 있는 마포 성미산마을이나 삼각산 재미난마을 등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세대 통합적 공동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이상의 공동체돌봄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 경우, 특정 생애주기에 있는 대상에 대한 돌봄으로 분절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VI. 기존 공동체 돌봄 정책사업의 문제점과 이후 과제

공동체 돌봄은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시키면서 돌봄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기주의의 경쟁적 삶에 따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고, 민주적 경험을 통해 공동체성의 강화 및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공공의 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돌봄이다. 그러나 이미 경쟁적 문화가 고착화된 사회에서 공동체 돌봄을 민간에만 의존하기에는 공동체 돌봄의 문화 확산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정책사업으로서 추진해야 할 타당성이 여기에 있다.

또한 정책입장에서 볼 때, 공동체 돌봄은 잃어버린 마을 공동체 유대를 회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 대상자로서의 낙인없이 돌봄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좀 더 부합되는 돌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공동체 돌봄의 필요성과 강점을 인식하여 자녀돌봄에서부터 청년, 중장년, 노인 돌봄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돌봄, 마을 돌봄을 표명하고 있으나 사업의 본래 목적이나 방향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으로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정책사업으로서 공동체 돌봄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추진 전략은 부모들의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주체가 되어 활동을 이끌어 가는 주민자치적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는 공동체 돌봄 운동에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참여자들 사이의 유대가 형성되기까지 기다리는 느린 사업방식, 관이 앞에서 지시하고 끌여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숨은 역할을 해야 한다. 정책으로서 공동체 돌봄사업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같은 주민자치의 느린 사업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다.

그동안의 많은 정책사업이 그랬던 것처럼 단기간의 양적 성과지향의 추진방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동체 사업은 정책 주체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주민이어야 한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공동체 돌봄으로의 점진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강압적, 지시적, 위계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 공동체성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사업시작 이후 이제 10년차에 이르고 있고, 참여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당초 목적으로 했던 지역사회 유대에 기반한 공동체 돌봄, 지역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가정의 돌봄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부모들의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사업담당자들의 공동체 돌봄 사업에 대한 이해없이 가족품앗이 팀수,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수와 같은 양적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조한혜정·차성란, 2017).

노인공동생활거주제의 경우에도 제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보다는 양적 확산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오히려 농촌지역의 비공식적 돌봄문화가 약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공

동체성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주체적 참여가 아닌 수동적 복지의존성이 높아지는(김유진, 2016 a) 공동체성 역주행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정책 사업으로서 공동체 돌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첫째, 참여자와 행정 모두의 공동체 돌봄의 비전과 가치의 공유, 둘째, 참여자들의 공동체 돌봄 역량강화, 셋째, 공동체 돌봄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넷째, 공동체 돌봄의 거점으로서 마을내 공용공간 확보를 들 수 있다.

첫째, 공동체돌봄에 대한 비전은 주체적 참여자인 부모나 주민들은 물론, 행정적 지원을 하는 관련 공무원들도 공유해야 한다. 공동체 돌봄이 주민들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민자치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종의 생활문화 운동이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행정에서 공동체 돌봄에 대한 이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사업이 방향을 잃지 않고 추진될 수 있다. 단기간의 성과지향의 방식으로는 사업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참여자들을 옳은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이 또 다른 복지사업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주민들의 공동체성, 공동체돌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는 공동체 가치, 공동체 의식 등 공동체성 관련 주제, 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회의 기술, 갈등관리 및 문제 해결, 사업추진 계획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경험적 차원에서의 성공사례를 예시함으로써 공동체돌봄의 비전을 그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돌봄이 공동 가치 지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동체 돌봄이 안정단계로 정착되기까지 실행능력, 문제해결능력, 추진력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공동체 돌봄 미경험자인 주민들의 점진적 공동체 체계화 및 정착을 위해 컨설팅 지원, 행정적 연계, 전문가 연계 등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중간조직 내에는 운영업무를 처리할 담당자 외에 컨설팅단, 지역주민들과 조직과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할 코디네이터 등의 인력이 요구되며, 중간지원조직은 이들 인력 양성 및 조직, 운영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동체 돌봄을 위한 공용 공간 확보의 문제이다. 개인주의는 물론 높은 익명성, 강도 높은 프라이버시 요구 등은 마을 안에서 주민들 사이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건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나 농촌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과 같은 공용공간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은 공동육아나눔터가 부모들에게 효용성이 높은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간의 추가적인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의 미비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보하는 것은 건가센터의 담당자나 행정담당자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경로당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로 설치의무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 2항)을 두고 있는데 비해, 마을돌봄 공간으로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의 아직 법적 규정으로 지원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돌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사업 추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에서 담당해야 할 과제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공동체 돌봄은 특히 시작단계에서 사업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할 활동가 또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과 참여자들 사이의 소통,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돕는 지원자 역할이 필요하나 현재는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 활동가가 부재한 상태이다. 공동체에 대한 가치 이해, 사업의 특성과 전략, 참여자의 요구와 문제 해결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전문 활동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현장에서 활동함으로써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는 공동체 돌봄의 안정화에 필요한 단계별 업무 매뉴얼 개발,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체 돌봄은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부모협동어린이집 형태의 공동육아 등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한 다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동체 사업이라는 점에서 민간의 공동체 활동과 차이가 있으며, 주민자치이나 돌봄이라는 가정기능과 연관된 영역의 사업이다. 정책사업으로서 마을만들기가 경제와 일자리에 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 마을의 공동체 돌봄은 가족의 기능보완에 초점을 둔다. 공동육아가 중산층 가족, 그들끼리만의 경계를 그리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공동체 돌봄은 마을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이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들을 고려한 비전과 목표수립, 관련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강소량 · 정혜윤 · 송창용 · 최일선 · 유선치 · 임승연(2017). 국내의 정부 및 민간의 50+정책 · 사업 실태연구. 서울시 50플러스재단.
- 2) 강은나 · 이민홍(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 47-56.
- 3) 공병혜(2010). 한국사회에서 노인 돌봄. 한국여성철학, 13권, 1-22.
- 4) 권용신(2016). 세대간 교류의 인식 및 소통증진.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21-433.
- 5) 권혁철 · 김형용(2017). 홀로 살아야 행복한, 중년 남성의 삶 - 4050세대 1인 남성 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행복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24(3), 267-290.
- 6) 김동철 · 고혁근 · 김대건(2016). 활동적 고령화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55(1), 123-153.
- 7) 김명자(1998). 중년기발달, 서울:교문사.
- 8) 김미경(2016). 1인 가구 시대 노후와 가족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소고. 사회사상과 문화, 19(4), 167-190.
- 9) 김미영(2015).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 형식. 사회와이론, 27, 181-218.
- 10) 김미정 · 백선정 · 남승연(2017). 마을 중심 보육 · 돌봄체계 운영에 관한 기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11) 김소영 · 선보영 · 전미영 · 남지민(2017).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KWDI 이슈페이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2) 김연자(2011). 혼종모형을 이용한 중년여성의 위기개념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김영란(2014). 노인1인가구 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제안-노인돌봄협동조합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2014 여름호, 21-32.
- 14) 김영란 · 장혜경 · 이윤석(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2017 연구보고서-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5) 김영옥(2014). 유아-조부모 세대간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유아교육연구, 34(6), 173-207.
- 16) 김영옥 · 이승현 · 이선행(2016). 일-가정양립실태조사(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7) 김유진(2016a). '지역 공동체 내에서 나이 들어가기' 관점에서 살펴 본 농촌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1(1), 251-273.
- 18) 김유진(2016).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노년학, 36(1), 21-38.
- 19) 김정석 · 김승은(2012). 남녀노인의 노년시작인식연령과 노인인지. 한국노년학, 32(1), 103-114.
- 20) 김진옥 · 권진(2015).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2(3), 265-302.
- 21) 김현희 · 박진아(2014). 지역사회 육아품앗이 활성화 모델 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22) 김혜경(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 비

- 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51(1), 155-198.
- 23) 김희선(2016). 힘의 악용으로서의 가정폭력과 종교: 기독교신앙의 역할. 목회와 상담, 27호, 71-98.
- 24) 노인환(2017). 농촌노인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경로당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용노인을 중심으로-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류경희 · 김순옥(2000).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대안적 가족형태로서의 가능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19-151.
- 26) 박은영(2002). 애착이론과 자아분화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변금선(2018). 활동적 노화 수준의 변화: 1931~1951년생 출생코호트 비교. 비판사회정책 61호, 95-135.
- 28) 보건복지부(2017).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육분야. 복지동향, 2017년 11월.
- 29) 보건복지부(2018). 노인 절반 이상(57.6%), “거동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 -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5. 24.
- 30) 서홍란 · 정윤경 · 김희년(2013). 신체적 질환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돌봄 행위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통권 61호, 57-83.
- 31) 석상훈(2011). 고령은퇴자의 퇴직과정과 은퇴 후 소득 비료. 응용경제, 13(3), 269-295.
- 32) 석재은(2014).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념 정립과 향상 방안-현행 전략의 한계와 ‘좋은 돌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한국사회복지학, 66(1), 221-249.
- 33) 손태주 · 차성란(2018). 제주지역 돌봄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34) 송경미(2016). 중년기의 가족부양부담과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송성성(2014). 부모-자녀간의 애착유형과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상황 및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중국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6) 신경아(2011). 노인돌봄의 탈가족화와 노인의 경험 - 재가노인과 시설거주 노인의 경험 연구. 한국사회학, 45(4). 64-96.
- 37) 심미경 · 민현정(2017). 아이키우기 좋은 광주 전남, 육아공동체에서 대안을 찾다. 광전리더스, 통권 60호, 1-20.
- 38) 어유경 · 김순은(2016). 지역 사회자본의 노인문제 대응: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지방행정연구, 30(3). 275-305.
- 39) 오제은(2013). 중년, 위기인가? 전환점인가? 중년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 - 인간발달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관점을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37(3), 141-166.
- 40) 유은주 · 김미영 · 이건정(2013). 농촌 공동생활가정 거주 노인의 공동생활체 경험 연구. 노인복지연구, 2013.12. 통권 62호, 151-172.
- 41) 윤성호 · 주상현(2018). 농촌 노인돌봄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 방향: 노인돌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32(1), 203-223.
- 42) 이명진 · 최유정 · 이상수(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 43) 이병창(2017). 자주성의 공동체. 서울: 먼빛으로.
- 44) 이수민(2013). 노인돌봄서비스 체계의 변화 -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후 -.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1, 7-22.
- 45) 이승윤 · 김민혜 · 이주용(2013). 한국 양육수당의 확대는 어떠한 정책형성과정을 거쳤는가?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정책 20(2), 195-232.
- 46) 이어봉(2017).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

- 건복지포럼 2017년 10월, 64-77.
- 47) 이옥경 · 문정희 · 박나리(2016). 부산지역 아빠육아 참여 활성화 방안.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48) 이은희 · 유현정 · 이준영(2016). 20대 청년세대의 고민과 경제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주요 인터넷 게시판 분석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2), 121-143.
 - 49) 이정민 · 이만형(2017). 대안적 공동체론과 관련 조례의 공동체 개념화. 서울도시연구, 18(2), 177-192.
 - 50) 이진숙(2010). 가족대안으로서의 농촌 독거노인 생활공동체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2(1), 95-119.
 - 51) 임소라(2018). 청년 주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달팽이 집’. 도시문제, 53(595), 32-35.
 - 52) 장수정(2012). 과천시지역 공동체에 관한 연구 - 돌봄공동체 가능성과 여성주의적 함의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2(2), 31-68.
 - 53) 조한혜정 · 차성란(2017). 제주도 육아 공동체와 육아 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포럼.
 - 54) 차선자(2008). 새로운 가족문화를 위한 가족정책: 대안가족 구성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7(2), 39-72.
 - 55) 차성란 · 권혜진 · 조정현(201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성과발굴 및 운영모델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56) 차성란(2018). 제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실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2), 1-24.
 - 57) 최인희 · 홍승아 · 김주현 · 정다운(2014).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58) 최협 · 김명혜 · 김세건 · 윤수종 · 정근식 · 표인주(2006). 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선인.
 - 59) 최희경(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돌봄정의. 한국사회정책, 25(3), 103-130.
 - 60)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8).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 61) 함선유 · 홍백의(2017).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재가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9(4), 203-225.
 - 62) 홍승아(2018). 남성 육아휴직과 기업의 조직문화. 젠더와 문화, 11(1), 145-183.
 - 6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6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1.26). 17년 육아휴직자, 8명 중 1명은 아빠.
 - 65) Charles, K. K., & Sevak, P. (2005). Can Family Caregiving Substitute for Nursing Home Care?, J. of Health Econ, 24(6), 1174-1190.
 - 66) Davey, A. & Patsios, D. (1999). Formal and Informal Community Care to Older Adult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0(3), 271-299.
 - 67) Hillery, G. A.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68) Motel-Klingebiel, A., Tesch-Roemer, C., & Von Kondratowicz, J. -J. (2005). Welfare States do not crowd out the family: evidence for mixed Responsibility from Comparative Analyses, Ageing and Society, 25(6); 863
 - 69) Nisbet, R. A. (1966). The Sociological Tradition. New York: Basic Books.
 - 70) Van Houtven, C. H. & Norton, E. C. (2004). Informal Care and Health Care Use of Older Adults, J Health Econ, 23(6), 1159-1180.
 - 7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cl700&bbtSn=705978)
 - 72)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https://www.50plus.or.kr/org/index.do>)

- 73) 오마이뉴스(2014. 1. 20). “모유수유 빼고 모두 가능 ... 나는 육아빠”.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50009
- 74) 한겨레(2018. 9. 4) 남성육아휴직, 핑 먹고 알 먹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679.html
- 75) 한국일보a(2018. 4. 2). 독거 중년남들 텃밭 가꾸며 수다. . . “외롭지 않아요”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4020475694684>
- 76) 한국일보b(2018. 9. 11). 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 이혼, 실직, 부도에 은둔형 외톨이로 . . . 위기 내몰린 중년 1인 가구.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00942095231>
- 77) e - 나라지표.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

- 투 고 일 : 2019년 05월 31일
- 심 사 일 : 2019년 06월 26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08월 20일